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3호 / 주간 26호

2025. 6. 2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기업의 급여·보수·인적용역대가 지급시 세금과 공과 등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7):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법인사업자 해외현지에서 내국법인명으로 차량구매 시, 법인세 관련 비용처리 가능 여부 - 대표이사 핸드폰 구입비 - 일확합병행태 관련하여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구매확인서 구매일 및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발의된 석유화학 특별법 주요 내용 - 연금수령방식의 특징과 활용	9 10
직장인Survival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장하기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 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전법규부가-470, 2024.10.30) -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 지원, AI·신재생에 3000억 투입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판매시 제공된 할인쿠폰에 의한 직접 할인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함	12
세무정보	- 해외금융계좌신고 자주묻는 질문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배당 소득,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15 26 32
회계정보	-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44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7):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भाग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의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23) 원칙 중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Publishing, Paris¹⁾,

1) pp.44-47 요약 분석 인용함.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에 기여하고, 부를 창출하고,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들은 파리 협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의 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하였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투자자와 기업이 이러한 전환 경로와 관련된 잠재적인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인적자본 관리를 포함하여 기업이 중요한 기후 변화 및 기타 지속 가능성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평가, 식별 및 관리하는지에 대한 공시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노출 및 관리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시의 핵심 특징은 투자자들에게 기후 및 기타 지속 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련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관리 구조와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이사만이 직무에서 기인되는 주요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기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외부효과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부문별 정책과 이사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수행해야 하는 예측 가능한 경계를 설정하는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정책 입안자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예를 들어 환경 규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A.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는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나 투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할 회고적이고 미래예측적인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는 다양한 기업의 과거 성과와 미래 전망을 비교한 후 자본을 배분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과 리스크를 평가할 때 중요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예: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평가 결과)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예: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더 나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A.1.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투자자의 기업 가치 평가, 투자 또는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자발적 이니셔티브나 추가 공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특정 환경 규제에 대한 편견 없이, 기업 공시 프레임워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 투자 또는 투표 결정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요구한다. 이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 시기 및 확실성이 포함된다.

A.2.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는 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고품질과 이해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A.3.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개, 재무보고 및 기타 기업 정보는 연결되어야 한다.

A.4.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또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공시 프레임워크는 투자자가 발표된 목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성과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나 기후 전환 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는 투자자의 기업의 가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확실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관점 모두에서 볼 때,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공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공개 프레임워크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발표된 목표의 신뢰성과 경영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개에는 예를 들어, 장기 목표가 발표될 때 중간 목표의 정의, 관련 지속가능성 지표의 연례 일관된 공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취하려는 가능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5.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해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격을 갖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의 연간 인증에 대한 요구 사항의 단계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공개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고품질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나 공시에 대한 의무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간의 인증 수준을 수렴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3일 (금)	6월 16일 (월)	6월 17일 (화)	6월 18일 (수)	6월 19일 (목)
미	달	러	(USD)	1362.90	1366.80	1363.60	1361.70	1373.20
일	본	엔	(JPY)	950.22	945.59	942.66	936.87	946.87
영	국	파운	(GBP)	1855.79	1852.56	1851.56	1828.35	1842.70
캐	나	다	(CAD)	1002.02	1006.18	1004.90	994.92	1002.67
홍	콩	달	(HKD)	173.64	174.13	173.71	173.47	174.94
중	국	원	(CNH)	189.39	190.88	189.93	189.65	190.88
유	로	화	(EUR)	1579.81	1576.81	1576.25	1563.03	1576.30
호	주	달	(AUD)	890.18	886.64	889.82	881.22	893.54
싱	가	폴	(SGD)	1065.81	1065.65	1064.94	1058.29	1068.39
말	레	이	(MYR)	322.89	321.94	321.57	320.74	323.07

법인사업자 해외현지에서 내국법인명으로 차량구매 시, 법인세 관련 비용처리 가능 여부

Q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 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현지에서 내국법인명으로 구매하여, 외국에서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및 유류대 등의 법인세법 상의 비용처리가능 여부와,
2. 위 내용이 만약 사실판단 사항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입증하는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차량운행일지
3. 법인차량의 해외현지 구매시 국내와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국내법인만 있음.)

A

1. 내국법인명의의 차량을 해외에서 구입한다고 국내에서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외현지에서의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귀사가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 법정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귀사가 자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법인차량의 해외 구매와 관련되어 세법에서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 핸드폰 구입비

Q 대표이사 핸드폰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계정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A 법인명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휴대폰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대한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지원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회사는 대학생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용한 대학생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훈련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담인력활동 수당(훈련비)을 회사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 입금 받은 수당을 해당 학생이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입금하고 부서장은 해당 학생을 훈련하고 교육한 직원에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수당을 입금 받은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A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 구매일 및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Q 당사는 A사로 영세율(국내) 매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구매일 22/05/11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22/05/12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2/06/01 자로 발행하였는데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5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6월10일까지 발급받으면 되므로, 공급일을 5월로 하여 6월1일에 발급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급일자를 6월로 하였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대여금은 대역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이 아닌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이나 저리의 약정이자율로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급여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종업원에게 학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법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이나 인정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반영한다. 이때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산입은 물론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직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자금대역시 인정이자계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직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 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 규칙 §44).

또한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상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

금불산입 적용은 배제하면서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해 왔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44(7))이 개정되면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자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그외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장기저리나 무이자 자금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인정이자금액은 $\text{가지급금 적수} \times (\text{인정이자율} - \text{실질대여금리}) / 365$ (윤년 366)로 계산하는데, 인정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한다.

법인에 차입한 금액 등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25년 귀속분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다.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여금은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때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국제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이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차입했다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 금리와의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89③).

◆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 ◆

-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규칙§44, 4호)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44, 7호)
-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44, 8호)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발의된 석유화학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 5 종 (세제 지원 등)	사업재편 위한 합병, 분할, 설비 축소, 시설투자,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제 6 조 (재정 지원 등)	사업재편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노후 설비 해체 등에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제공
제 7 조 (전기요금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또는 보조
제 8 조 (규제 특례 등)	생산시설 신증설, 개선, 설비 폐쇄 시 절차 간소화 환경 관련 초과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 신기술 적용, 신공정 전환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신속 조치
제 9 조 공정거래법 특례	기업간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 출하시기 등 대한 협의 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제 10 조 (사업재편 유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음

화

국민펀드 조성 방안

• 조성규모

약 100조원(정부, 민간 공동 조성)

• 주체

정부, 국책은행, 공적연금 등 국민 투자 참여

• 투자방식

국민 투자금은 자펀드, 공공 자금은 모펀드로 운용

• 투자대상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연금수령방식의 특징과 활용

연금수령방식	주요 내용	활용 방법
종신연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고, 중도 해지 및 변경 불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종신 소득 확보
금액지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주기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수령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기간이 유동적임 	정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기간지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령 기간과 주기를 사전에 확정함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금액이 변동됨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원
연금수령 한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동됨 	절세혜택을 누리며 최대 금액 인출
수시인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수급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세부담이 늘어남 	다른 소득원이 있을 때 예비자금으로 활용



세금포인트·탄소중립 혜택, 이제 은행앱에서도

개통 기업	서비스 특징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실적 확인 및 스타포인트로 전환하여 에코테크 가능
코나아이	코나카드앱에서 탄소중립포인트를 코나캐시로 전환하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농협은행	올원뱅크앱에서 반려동물 등록병원 예약·정보 관리 및 세금포인트 조회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하나원큐앱내 소비생활 안전정보 메뉴를 통해 다양한 리콜정보 및 위해정보 제공
NS홈쇼핑	NS홈쇼핑내 고객센터 메뉴를 통해 손쉽게 안전정보 조회 및 확인 서비스 제공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앱에서 다양한 제품의 참가격 및 판매점 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SK스토아	SK스토아애플·웹에서 오프라인 500여개 판매점의 생필품 참가격 정보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우리WON지갑에서 내게 필요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조회 및 예약 서비스 제공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장하기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2. 하루 10분, 배움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습관을 들이면, 1년이면 약 60시간의 자기계발 시간이 생깁니다. 짧은 강의, 뉴스레터, 팟캐스트 등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를 활용해보세요.

3.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이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됩니다.

4. 업무 외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세요

다른 부서 혹은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규모 스터디 참여도 좋은 출발입니다.

5.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주세요

직장에서의 평판은 곧 당신의 전문성을 말해줍니다. 맡은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내고, 자신만의 강점을 하나씩 쌓아가세요. 성실함, 정확함, 커뮤니케이션 능력... 당신만의 무기를 키우는 것이 곧 자기계발입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판매시 제공된
할인쿠폰에 의한 직접 할인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함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예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전법규부가-470, 2024.10.30

질 의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예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신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 예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소득-341, 2024.09.25

질 의

- 시스템 개발업체인 질의법인은 국내 120여개 기관에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교육부 인가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각 기관은 학습자들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 발행
-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대학교육비(학점은행제) 자료 제출

질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 외의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여부

회 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 질 의

- 양봉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기자재는 벌통, 채밀기와 벌통 내부를 구성하는 소초세트*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초세트 중 소초광 판매금액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으로 구성되며 사양기, 격리판은 반영구적 사용
- 양봉업자는 처음 양봉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초세트를 구입한 후 1~2년 간격으로 소초광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 자문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조합원에게 소초세트를 세트 또는 개별물품 단위로 판매하고, 판매금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질의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51, 2024.06.27

■ 질 의

-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정사항은 소득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 '23년 약정대출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금액*을 충족함
- *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

질의

-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정사항은 소득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 대출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금액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높은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벤처 중소기업에 1조3000억 지원, AI 신재생에 3000억 투입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자금이 8000억원 신규 지원된다. 앞선 예산안(5000억)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벤처·AI 부문은 앞선 예산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 1000억원, 문화콘텐츠 분야는 850억원 늘어난 38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은 2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되고, 신산업분야 초기기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 패키지는 지원대상은 404개 늘어난 2015개이며, 지원액도 420억 늘어난다.

AI·팹리스는 유망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지원도 210개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액도 120억원을 추가 배치한다.

AI모델 및 실증·기술 도입에 6대분야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715억원, 총사업비 1.0조원을 지급한다.

AI인프라 부문에선 국산 NPU 조기 상용화 개발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 용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을 118억원 확대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인당 15~50만원 지급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국민 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상위 10% 512만명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38만명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자·지급 수단에 구분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지원+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 할인율이 결정되는데, 이번 추경 조치로 대도시

0→2%(기존 불교부단체), 수도권 2→5%, 비수도권 2→8%, 인구감소지역 5→10%로 국비지원율이 차등 지원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최종 소비자 할인율은 대도시 최소 7%,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까지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가전데 1등급 제품을 새로 구매하면 구매비용 중 10%를 환급해준다. 환급한도는 30만원, 예산은 3261억원이 배치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해 778억원을 투입해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부문 소비 분야에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6.5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근로자 입장에선 20만원을 넣어서 40만원의 휴가비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준다.

자영업자 143만명에 특별채무조정 1.4조원... 폐업철거비 6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고금리 기간 채무상환부담을 받는 취약 자영업자 143만명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16조원 규모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13만명이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90%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10만명, 소요 예산은 7000억원 정도다.

경영위기 자영업자 19만명에 7년 분할상환, 이차지원 1%p, 폐업 기업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입 자금은 2904억원 정도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을 추가 배치하고, 철거비 지원액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2025. 6

1 신고의무자 - 개인

Q.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로 입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 해외 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원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Q.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

Q.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거소는 주소의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은 관할 일반 행정관청에 통상적인 사실 접수를 합니다.

Q.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자 또는 영주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 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정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국가기관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법인이 2024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25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입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Q.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Q.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A.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A.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Q.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나요?
- A.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Q. 해외소재 은행의 A 예금계좌(이자 없음)에 5월 1일 2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 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 31일 평가액 30억 원이 매월 말일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될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어떤 것이가요? (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 A.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 원을 예치한 B 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 5월 2일 해지한 A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 잔액도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차명계좌의 잔액도 합산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Q. 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률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4억 원)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공동명의로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로 모두가 잔액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중 일부 명이 다른 공동명의로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며 다른 공동명의로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 원 넘게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2023년 6월(20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입니다.

Q.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2호)

Q. 외화금액은 동일한데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원화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Q.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 원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A.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잔액의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이하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도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Q.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A.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A.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화로 해야 하나요?
- A.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란은 원화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

액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Q.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요??

A.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바 국제 기준으로 3글자의 부호로 표시하며, 현재 제정된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등

Q.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A.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에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환율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사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환율조회]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과태료

Q.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억 원이 들어 있던 해외계좌가 누락된 사실이 2025년 8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으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9년 ~ 2023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액 20억 원을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과태료 \ 부과연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태료율	10억 원	10%	10%	10%	10%	10%
과태료		2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 만약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미(거짓)소명 과태료(10%)가 연도별로 추가 부과됩니다.

- Q.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또는 공동명의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A.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또는 공동명의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Q. A계좌 최고잔액을 5월 31일 10억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2월 31일이 A계좌 8억 원, B계좌 4억 원 총 12억 원으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 A. 4억 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관련예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5.2]

- Q.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 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 최근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가 10~20%

에서 10%로 인하되었는데, 그 적용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 A. 신고의무를 위반한 귀속과세기간이 2025. 2. 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분부터 인화된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Q. 과태료 부과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 A.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①)

예를 들어 2019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경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②)

Q.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후 지정된 기일까지 자진납부서 제출이나 의견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제출이나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것만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②)되며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통지 후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재산압류 등 체

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행위위반자가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나요?

A. 행위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사망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위반자가 법인인 경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의2)

6 해외가상자산계좌

Q.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련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Q.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 : FTX)의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Q.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

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Q.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A.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인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Q.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Q.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A.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가격을 확인할 최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Q.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 : 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A.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

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일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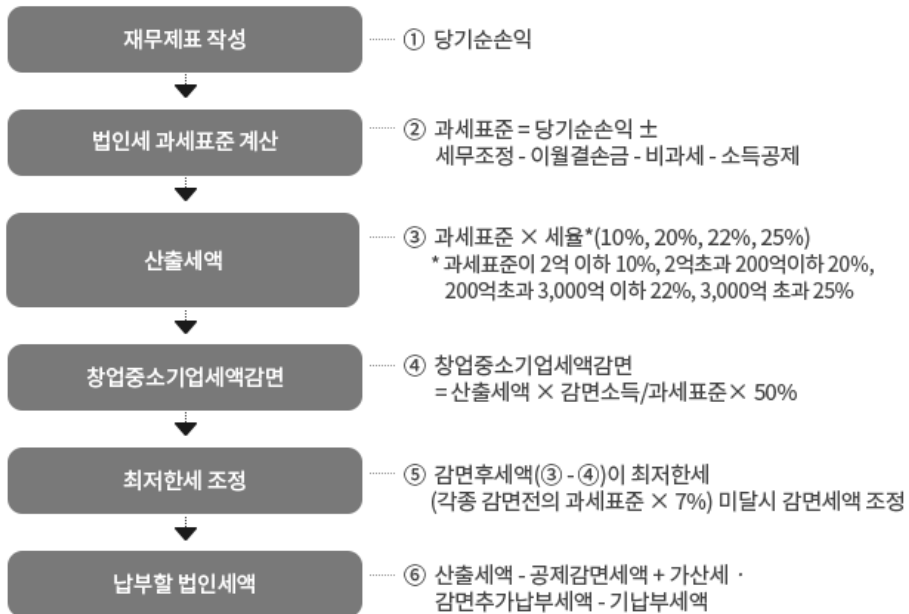
- Q.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A.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신고서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 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 Q.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A.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4신 "⑬기준일 잔액"에 7억 원을 적습니다.
- Q.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A.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⑰ 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 Q.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6월 신고). 따라서,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은 미신고 한 경우라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국세청, 2025. 6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⑩에 따른 중소기업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50(75 \cdot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525)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¹⁾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³⁾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³⁾	그 외			
5년 100% ²⁾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3)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24.12.31.까지 적용)
 -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

율에 따라 25 ~ 50% 추가감면

-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 100%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제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22년 창업한 중소기업(50% 감면대상인 경우)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22) 10명 → ('23) 15명 → ('24) 20명]
 - ('22 과세연도) 50% 감면
 - ('23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 $[50\% \times (15-10)/10]$ = 총 75%감면
 - ('24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 $[50\% \times (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3) 8명 → ('24) 16명]
 - ('23 과세연도) 50% 감면
 - ('24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 $(60\% \times 1/2)$ = 총 80% 감면
 -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4자리)를 따름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 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 국세청, 2025. 6

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우수사례 공유·노하우 전수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으로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유형2)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유형3)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유형1)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 (사례①) 고지서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
 - * (사례②)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편법배당을 통한 세금납부 회피 공모
 -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형2)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 두 번째 대상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
 - * (사례③) 일가족에게 사업소득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
 - * (사례④)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입니다.

-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3)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 세 번째 대상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고,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 * (수색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을 압류하여 징수
 -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여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으로
 - * (수색④)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하여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징수
 - 이들은 공정과세를 훼손하여 대다수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재산은닉 혐의 장소를 시각화하여 제공

3 추진성과

◆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 원 징수

-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하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고액상습채납자는 엄정 대응 ... 생계형 채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하여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①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고액상습채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②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 ③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④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채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한 채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편,
 -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5 은닉재산신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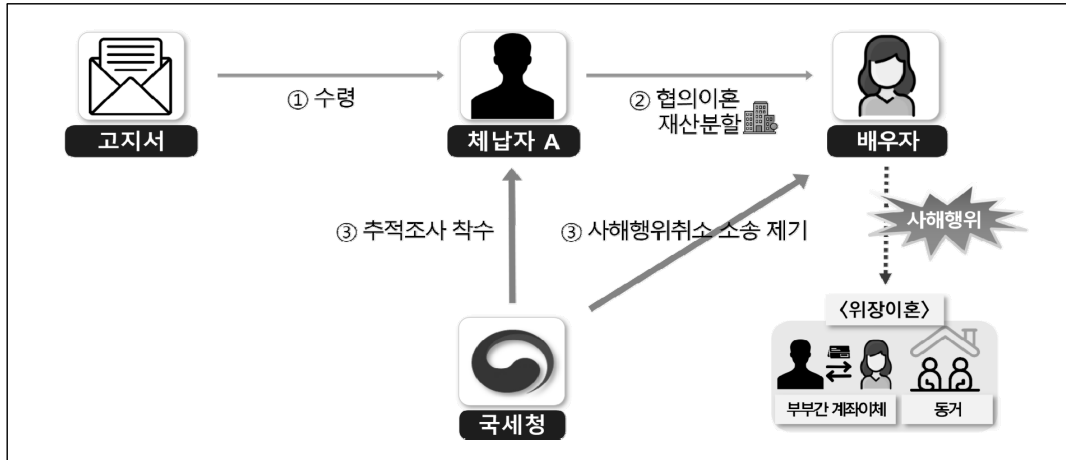
- 고액·상습채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채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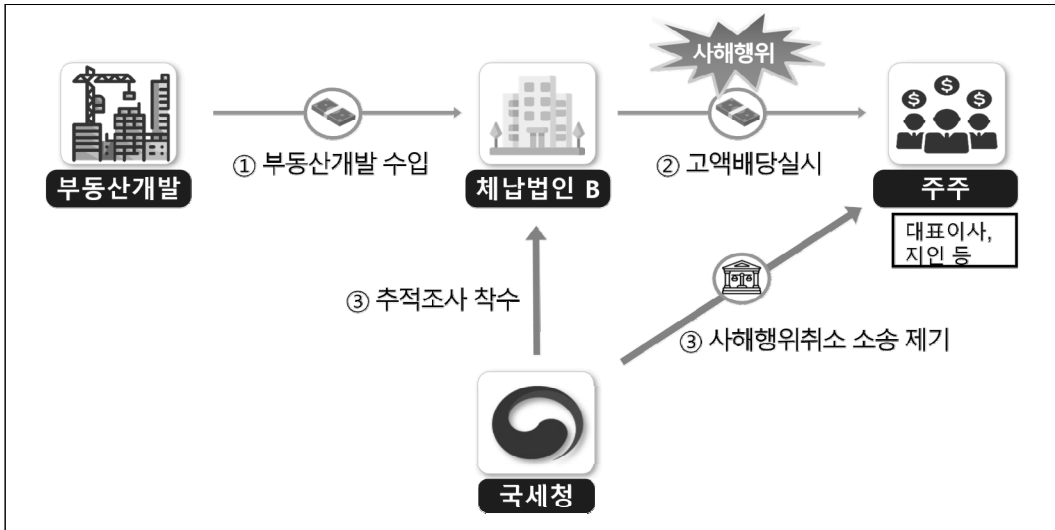
붙임 1 - 주요 추진사례

추적사례 ①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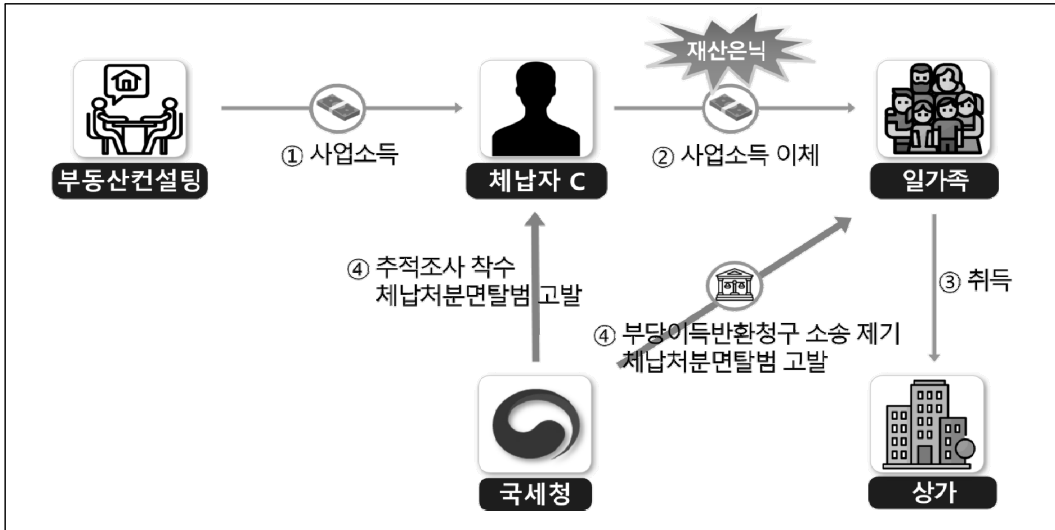
- 채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채납
 -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채납 발생
 -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재산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A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¹⁾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A에게 증여받은 乙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처분 조치
 -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데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

추적사례 ②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하여 편법배당을 통해
깍대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법인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B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
 -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를 미납함에 따라 체납 발생하였고, 고액 배당 후 체납하여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재산추적조사 진행
 - B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였고,
 - 납부할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²⁾을 최대한도 부풀려 잔여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 확인
 - B법인의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해 각 주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주주 재산을 가압류 조치
- 2) 배당가능이익 = 자산 - 부채 등(법인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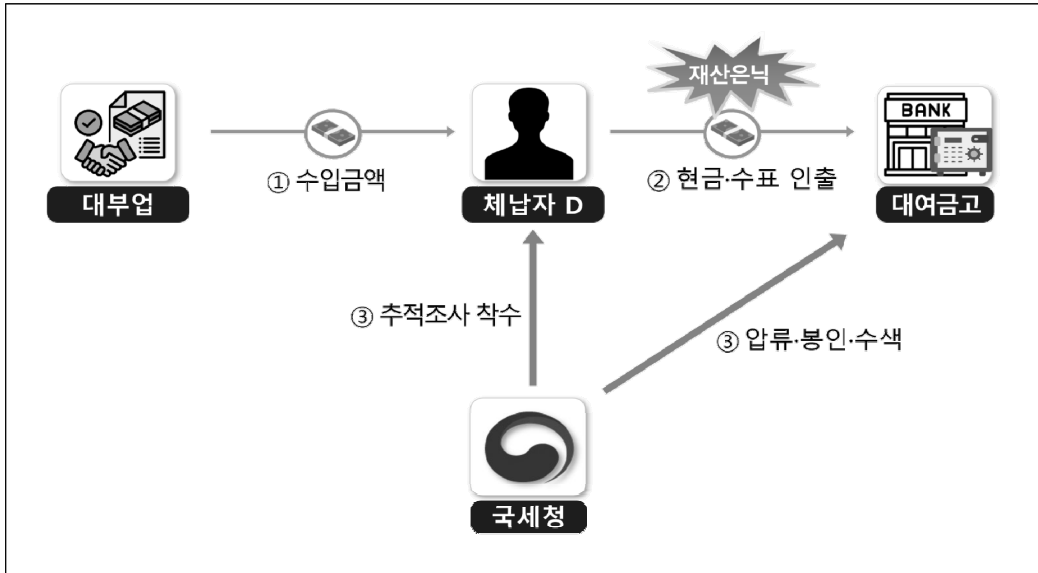
추적사례 ③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배 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
 - C는 가족 4명(부모, 자녀, 누나)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
 - C는 실제로는 실내 사우나 시설, 샵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

- 재산추적조사 진행
 -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
 - 종합소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

추적사례 ④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 D는 세무조사 진행중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
 -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 재산추적조사 진행
 - 대여금고에 은닉한 재산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재산추적이 어려워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
 - 대여금고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억 원을 및 수표 □□억 원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

붙임 2 - 수색 사례

수색사례 ①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체납자는 양도대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출금한 뒤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
 - 실거주지 분석 결과 체납자는 상가건물 양도 이후 소형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실제 미거주
- 수색집행 결과
 -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하여 해당 장소를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확정
 - 체납자의 고성, 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

수색사례 ②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여 등산배낭 속 수백돈의 금괴뭉치 찾아내 총 3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체납자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 지점 15곳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 수색집행 결과
 -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하였고, 수색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 실시
 -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하는 한편,
 -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찾아내어 꼼꼼히 살펴본 결과 현금, 금괴뭉치 수 백돈 등을 발견하여 총 3억원 징수

수색사례 ③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
천장 찾아내 5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억원 체납
 -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 수표 지급정지만으로는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시된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 실시
- 수색집행 결과
 -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착수
 -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하여 총 5억원 징수

수색사례 ④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하여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
바 등 찾아내 총 12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체납자는 증여세 부과 전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 체납자의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실제로는 모친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
- 수색집행 결과
 -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모친이 살고있는 고가주택을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중인 정황을 확인하여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 실시
 - 실거주지 베란다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강제개문한 후 비밀금고 속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 발견하여 총 12억원 징수

수색사례 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 압류하여 총 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의 대표로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와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배우자 사망으로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 보험금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 체납자의 주소는 법인의 소재지이나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혐의

- 수색집행 결과
 -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총45점) 압류하여 총 1억원 징수

붙임 3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 2025. 5

-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25.7.22.(화)부터 시행된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25.4.22일 개정 → 7.22일 시행 예정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고시안 예고('25.5.22.~6.1.) → 6월중 개정, 7.22일 시행 예정

※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25.7.22. 시행) 주요 내용

- ❶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 ❷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現)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납입기일 직전’ 발행공시 가능) → (改)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
- ❸ 5%를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5%를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시가총액의 10만분의1 → (改)시가총액의 만분의 1)
(상장법인 사업보고서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20억원 → (改)10억원~20억원)

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예) 주권상장법인, 증권(예: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등(자본시장법 §159 ①, 동법 시행령 §167①)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25.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예시) '25.3분기 중 제출의무 발생일자별 제출(공시)기한(12월말 결산법인)

(사례 1)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7.30.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4.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2)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8.13.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18.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3)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8.20.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25.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25. (:5일 이내)**

※ 예: 신규 상장의 경우 상장한 날, 주권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 금융위원회, 2025. 5

- ◆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 합리화(150%→130%) 및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정비 → 6.11일부터 시행
- ◆ 기본자본 규제, 할인을 현실화 등 보험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정부, 관계기관,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

'25.6.11.(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권고기준(K-ICS 130%)은 ①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②舊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③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관련 총자본비율 규제 10.5%를 K-ICS 준용 시 131.25%

< ※ 참고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

1. 인허가 관련 요건

- ① 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 ② 자본감소 :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 ③ 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 [변경]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 ① 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 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규정§6-11의6)
 → [변경] 최종('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3.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 ①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②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 조달,
 ③ 중도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④ 상환할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 [변경]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 면제,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둘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를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6.11일 금융위원회 고시 즉시 시행된다.

< 건전성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

금년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② '26~'27년 할인을 현실화 시행계획 ③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新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